

2018.04.17

##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개정 예고 안내

### 1. 개요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가 다음과 같이 공고되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 개정 사유

- 특수관계자간 거래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ACVA) 활성화  
화를 위한 혜택 확대 및 사후관리 관련 규정 정비
- 제 4방법 합리적 적용을 위한 근거 마련
- 중고물품 및 보세전시장에서 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 산  
출방법 명확화
- 기타 민원 처리기간 명시 등을 위한 일부 서식 개정

### 3. 주요사항

#### (1) ACVA 활성화를 위한 혜택 확대 및 사후관리 규정 정비

- ▶ 사전심사시 제출서류 정비 및 연례보고서 제출기간  
확대, ACVA 결정 물품의 정기 관세 조사 유예 근거 마련  
등으로 ACVA 활성화 촉진 (제61조, 제65조, 제66조)

#### (2) 동종·동류비율 산출방법 정비

- ▶ 산업평균율을 이용한 동종·동류비율 산출방법 삭제 등  
동종·동류비율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한 처리방법  
명확화로 불합리한 제4방법 적용 배제 근거 마련(제26조)

2018.04.17

##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개정 예고 안내

### 3. 주요사항

#### (3) 중고물품 및 보세전시장에서 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 산출방법 명확화

▶ 중고물품의 과세가격 산정방법에 관한 적용 절차 및 보세전시장에서 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 산정방법을 정비하여 합리적 과세가격 산출(제34조, 제39조)

#### (4) 기타 서식 개정

▶ 확정가격 신고기간 연장 신청(수리)서 등 민원처리 신청서에 처리기간 명시 및 ACVA 관련 규정 개정에 따른 서식 변경

### 4. 의견제출

- ▶ 제출처 : 관세청 심사정책국 법인심사과
- ▶ 담당자 : 노지선 사무관 (☎ 042-481-7656)  
박종호 주무관(☎ 042-481-7987)
- ▶ 제출기한 : 2018. 4. 20.(금)
- ▶ 제출방법
  - E-mail : jeesun@customs.go.kr, itsme@customs.go.kr
  - 우편 :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법인심사과
- ▶ Fax : 042-481-7989

2018.04.17

**[전국세관] 1,000달러 이하 해외직구물품 관세환급 요건 완화**

이달 10일부터 해외직구로 수입한 개인 자가사용물품에 대해 **수출신고를 못하고 반품한 경우에도**, 관세 등 수입 시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환급요건이 완화됩니다.

**[종전]** 수입신고필증 + 수출신고필증 제출

**[개선]** 수입신고필증 + 수출갈음서류 제출

**[기대효과]** 이전에는 모든 수입물품의 반품시 환급을 받으려면 수출신고필증 제출이 필수 요건이었으나, 앞으로는 수출신고를 못하고 국제우편 등으로 반품한 경우에도, **운송 확인서류, 반품 확인서류 및 환불영수증으로 관세환급이 가능합니다.**

**[적용대상]** 물품가격 미화 1,000달러 이하 해외직구로 수입한 개인사용물품. 1000달러 초과 물건은 기존처럼 세관장에게 직접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신고필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환급신청방법]** 전국세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 또는 팩스로 환급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문의]** 관세청 심사정책과 (042-481-7754/7863)

**[전국세관] 5월 가정의 달에 수입 선물용품 세관검사 강화**

관세청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선물용품 수요가 늘어나면서 **4.9(월)부터 5.4(금)까지** 약 4주간을 '선물용품 특별 통관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완구류·문구류·자전거 보호장구·마사지기기 등** 어린이·부모님 선물용으로 국내소비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위주로, 전국 세관에서 수입통관 심사와 검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세청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세요.

#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개정 신규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개정 사유
<p>제26조(동종·동류비율 산출)</p> <p>① 세관장은 영 제27조제5항에 따라 동종·동류비율을 산출하는 경우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비교대상업체의 선정을 요청할 수 있다.</p> <p>⑧ 동일 연도에 동일 물품(품목군)에 대하여 동종·동류비율을 결정한 사례가 있는 경우에는 동 비율을 적용할 수 있다.</p> <p>②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제4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라 비교대상업체를 선정하고 자체 산출한 동종·동류비율과 함께 세관장에게 통보한다. &lt;단서 신설&gt;</p>	<p>제26조(동종·동류비율 산출)</p> <p>① ----- ----- ----- ----- ----- <u>다만, 동일 연도에 동일 물품(품목군)에 대하여 동종·동류비율을 결정한 사례가 있는 경우에는 동 비율을 적용할 수 있다.</u></p> <p>② ----- ----- <u>제7항</u>----- ----- ----- <u>다만, 제4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방법으로 비교대상업체가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종·동류비율을 산출할 수</u></p>	<p>□ 비교대상업체가 선정되지 않는 경우 처리방법 명확화 및 산업 평균율을 이용한 동종동류비율 산출방법 삭제</p> <p>○ 동일 연도에 동일 물품(품목군)에 대하여 동종동류비율을 결정한 사례가 있는 경우에 동종동류비율의 산정을 생략하고, 동 비율을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조문 정리</p> <p>○ 동종동류 수입물품을 국내 판매하는 비교대상업체를 찾을 수 없거나, 동 업체의 동종동류 물품의 판매시 부가하는 이윤 및 일반경비의 금액을 확인할 수 없는 등 동종동류비율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한 처리 방법 명확화</p>

현행	개정(안)	개정 사유
<p>③ ~ ⑥ (생략)            ⑦ (생략)            1. ~ 3. (생략)            4. <u>산업평균율(해당 업종과 연계 업종을 고려하여 결정된 업종의 전체 외부감사 대상법인의 매출 총이익율)을 기초로 산출. 다만, 산업평균율을 기초로 산출하는 경우에는 동종·동류비율 산출 대상업체 및 동종·동류물품 수입실적이 없는 업체는 제외한다.</u></p> <p>⑨ (생략)            ⑩ (생략)</p>	<p><u>없음을 통보한다.</u></p> <p>③ ~ ⑥ (현행과 같음)            ⑦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p> <p><u>&lt;삭제&gt;</u></p> <p>⑧ (현행과 동일)            ⑨ (현행과 동일)</p>	<p>※ 불합리한 제4방법 적용 배제 근거 마련</p> <p>○ 산업평균율에 의한 산출방식은 수입실적이 미미하거나 수입 상태 그대로 국내에 판매하지 않는 업체가 포함될 개연성이 많으므로 산출방법에서 제외</p>
<p>제34조(중고물품 등의 과세가격)</p> <p>① 영 제29조제3항제4호에 따라 중고수입물품(「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규정에 의한 ‘해체용 선박’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제6방</p>	<p>제34조(중고물품 등의 과세가격)</p> <p>① -----            -----            -----            -----</p>	<p>□ 규정 명확화, 합리화</p> <p>○ 「법인세법시행규칙」상 기준내용 연수와 감가상각자산의 상각률표 중 정률법에 의한 상각률에 따라</p>

현행	개정(안)	개정 사유
<p>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가격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lt;단서 신설&gt;</p> <p>1. ~ 2. (생략)</p> <p>3. <u>국내에서</u> 거래되는 신품 또는 중고물품의 수입당시의 과세가격을 기초로 가치감소분을 공제한 가격</p> <p>② ~ ④ (생략)</p>	<p>-----</p> <p>-----</p> <p>----- . <u>다만, 제3호를 적용하여 제2항제1호에 따라 가치 감소분을 산정하는 경우 내용연수가 경과된 물품은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u></p> <p>1. ~ 2. (현행과 같음)</p> <p>3. <u>해외로부터 수입되어 국내에서</u> 거래되는 신품 또는 중고물품의 수입당시의 과세가격을 기초로 가치감소분을 공제한 가격</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과세가격을 산출하는 경우, 명백히 사용가치가 있는 물품임에도 불구하고 과세가격이 “0”인 비합리적인 결과 발생 ⇒ 단서규정을 신설하여 비합리적인 과세가격 산출 가능성을 차단</p> <p>※ 부패영향평가 결과 ‘개선 의견’ 사항 반영</p>
<p>제39조(보세전시장에서 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p> <p>① (생략)</p> <p>② <u>법 제158조에 따라 보세구역에서 보수작업 후에 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은 보수작업으로 증가된 가치</u></p>	<p>제39조(보세전시장에서 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u>법 제190조 및 영 제208조제1호에 따른 보세전시장 내 외국물품의 사용 후에 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u></p>	<p>□ 보세구역 보수작업으로 인해 증가된 가치분에 대한 평가 원칙 명시</p> <p>○ 구매자의 자기계산 행위에 대한 비용은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음을 명시(WTO관세평가협정 제1조에</p>

현행	개정(안)	개정 사유
<p>분(보수작업에 소요된 자재비, 인건비, 공구 사용비 등)을 포함한다. &lt;단서 신설&gt;</p>	<p><u>격은 그 사용으로 인해</u> 증가된 가치분(<u>보수작업 등 사용으로 인해</u> 소요된 자재비, 인건비, 공구 사용비 등)을 포함한다. <u>다만, 수입 전 구매자가 자신의 계산으로 수행한 활동에 대한 비용은 과세가격에 포함하지 않는다.</u></p>	<p>대한 주해(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 2 및 예해 16.1에서 규정) ※ 관세평가분류원 본청 종합감사 결과 ‘통보’사항 반영</p>
<p>제51조의3(확정가격 신고기간의 연장) ① ~ ② (생략) ③ 확정가격 신고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거래계약 내용이 변동되는 등 잠정가격을 확정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8조제7항에 따른 확정가격 신고기간 만료일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확정가격 신고기간을 연장하고 별지 제9호 서식의 확정가격 신고기간 <u>연장신청수리</u></p>	<p>제51조의3(확정가격 신고기간의 연장)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 ----- ----- ----- ----- <u>연장신청수리</u></p>	<p>□ 확정가격 신고기간 연장신청 처리기간 명시  ※ 본청 일상감사('17.8.22) 결과 ‘민원서식 처리기간’ 반영</p>

현행	개정(안)	개정 사유
<p>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후략)</p>	<p><u>서를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처리하여 신청인에게</u> ----- . (현행과 같음)</p>	
<p><b>제58조 (심사결과 통보)</b></p> <p>① 제53조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이를 심사하여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3호 서식의 과세가격결정방법 <u>사전심사서</u>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이를 통관예정지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사전심사 결과에 대하여 재심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9호 서식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재심사 신청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심사와 관련한 자료 보완, 신청</p>	<p><b>제58조 (심사결과 통보)</b></p> <p>① ----- ----- ----- <u>사전심사 결정서를</u> ----- ----- .</p> <p>② ----- ----- ----- ----- ----- .</p>	<p><input type="checkbox"/> 용어 명확화</p>



현행	개정(안)	개정 사유
<p>내용 변경 및 업무처리기한에 관한 사항은 제54조, 제57조 및 제1항을 준용하며, 제1항의 “별지 제13호 서식의 과세가격결정방법 <u>사전심사서</u>”는 “별지 제20호 서식의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재심사 결과 통보서”로 대체한다.</p>	<p>----- ----- ----- ----- <u>사전심사 결정서를</u> ----- ----- ----- ----- -.</p>	
<p>제59조(관세조사 면제) 세관장은 사전심사를 받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대하여는 법 제1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관세조사를 <u>면제</u>할 수 있다.</p>	<p>&lt; 삭제 &gt;</p>	<p><input type="checkbox"/> 법률상 관세조사 면제의 위임 근거가 없음</p>
<p>제61조(특수관계자간 수입물품 사전심사 신청) ① 법 제30조제3항제4호에 따른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자 중 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이하 “특수관계 사전심사”라 한다)를 신</p>	<p>제61조(특수관계자간 수입물품 사전심사 신청) ① ----- ----- ----- -----</p>	<p><input type="checkbox"/> 특수관계자간 수입물품 사전심사 필수 제출서류 대상 축소</p> <p>○ 특수관계자간 수입물품 사전심사는 미래에 수입될 물품에 대하여 검토하는 것이므로 과거 자료</p>

현행	개정(안)	개정 사유
<p>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 서식의 사전심사 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서류와 함께 본부세관장을 거쳐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제출한다. &lt;단서 신설&gt;</p> <p>1. ~ 9. (생략)  ② ~ ④ (생략)  ⑤ <u>납세의무자가 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를 신청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가격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16조에 따른 잠정가격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64조제2항에 따라 신청인이 동의한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가격신고를 함에 있어 잠정가</u></p>	<p>-----  -----  -----  -----</p> <p>--. <u>다만, 제2호 및 제8호의 서류는 특수관계 사전심사 신청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과 관련이 없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u></p> <p>1. ~ 9.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u>&lt;삭제&gt;</u></p>	<p>(제2호 및 제8호)는 필요시만 제출토록 개선</p> <p>○ 법령상 위임근거 부족  - 관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의 잠정가격 신고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잠정가격 신고 가능</p>

현행	개정(안)	개정 사유
<p><u>격신고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u></p>		
<p><b>제64조 (사전심사 결과통보)</b>            ① ~ ③ (생략)            ④ 신청인이 제2항에 따라 동의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 제출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6호 서식의 과세가격결정방법 <u>사전심사서</u>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이를 통관예정지 세관장에게 통보한다.            ⑤ ~ ⑥ (생략)</p>	<p><b>제64조 (사전심사 결과통보)</b>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u>사전심사 결정서를</u> -----            -----            --.            ⑤ ~ ⑥ (현행과 같음)</p>	<p><input type="checkbox"/> 용어 명확화</p>
<p><b>제65조(연례보고서의 제출 등) ①</b>            제64조에 따라 <u>사전심사서</u>를 교부 받은 신청인은 매년 기업회계 결산일 이후 3월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17호 서식의 연례보고서를 제63조제8항에 따라 특수관계 사전심사를 검토한 본부세관장</p>	<p><b>제65조(연례보고서의 제출 등) ①</b>            ----- <u>사전심사 결정서를</u> -----            -----            ----- <u>4월</u> -----            -----            -----</p>	<p><input type="checkbox"/> 연례보고서 제출 기한 확대 및 사전심사 취소·철회·변경 사유 정비</p> <p>○ 기업의 회계 결산 및 공시 기한인 3월, 연례보고서 작성에 1월을 감안하여 연례보고서 제출기한을 확대 조정</p>

현행	개정(안)	개정 사유
<p>에게 제출한다. &lt;단서 신설&gt;</p> <p>1. 사전심사결과 <u>승인된</u>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전제가 되는 근거 또는 가정의 실현여부</p> <p>2. 사전심사결과 <u>승인된</u> 과세가격 결정방법으로 산출된 과세가격 및 그 산출과정</p> <p>3. ~ 6. (생략)</p> <p>② 제1항에 따라 연례보고서를 제출</p>	<p>-----. <u>이 경우 신청인은 사전심사 결정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기업회계 결산일까지의 기간이 6월 미만일 경우 당해년도 연례보고서를 차년도 연례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세관장은 본사의 자료 제공 지연 등의 사유로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고서를 제출하는 자의 요청에 따라 2개월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u></p> <p>1. 사전심사결과 <u>결정된</u>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전제가 되는 근거 또는 가정의 실현여부</p> <p>2. 사전심사결과 <u>결정된</u> 과세가격 결정방법으로 산출된 과세가격 및 그 산출과정</p> <p>3. ~ 6. (현행과 같음)</p> <p>② -----</p>	<p>○ 6월 이내의 연례보고서를 차년도 연례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정비하여 기업 편의성 제고</p> <p>○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제출기한 연장(2월*) 규정을 추가 반영</p> <p>* 연례보고서 제출 후 본부세관의 검토기간이 6월임을 고려하여 반영</p> <p>※ 관세평가분류원 본청 종합감사 결과 ‘개선’ 요구사항 반영</p> <p>○ 법률 용어와 통일되게 정비 (“승인된” → “결정된”)</p> <p>○ 용어 명확화</p>

현행	개정(안)	개정 사유
<p>받은 본부세관장은 그 연례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제64조제4항에 따라 교부받은 <u>사전심사서</u>의 내용에 따라 수입 물품에 대한 가격신고 등이 적정하게 이행되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제출한다. 본부세관장은 연례보고서 검토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3조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p> <p>③ (생략)</p> <p>④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제3항에 따라 본부세관장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이미 <u>승인한</u> 사전심사 내용을 <u>취소</u>할 수 있다.</p> <p>1. ~ 4. (생략)</p>	<p>-----</p> <p>-----</p> <p>-----</p> <p><u>사전심사 결정서의</u> -----</p> <p>-----</p> <p>-----</p> <p>-----</p> <p>-----</p> <p>-----</p> <p>-----</p> <p>-----</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p> <p>-----</p> <p>-----</p> <p>-----</p> <p>-----</p> <p><u>결정된</u></p> <p>----- <u>취소</u></p> <p><u>또는 철회</u>할 수 있다.</p> <p>1. ~ 4. (생략)</p>	<p>○ 사전심사 취소·철회 사유 재조정</p>

현행	개정(안)	개정 사유
<p><u>&lt;신설&gt;</u></p> <p>⑤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제3항에 따라 본부세관장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이미 <u>승인한</u> 사전심사 내용을 <u>철회 또는 변경</u>할 수 있다.</p> <p>1. 사전심사결과 <u>승인된</u>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전제가 되는 조건이나 가정의 중요한 부분이 변경된 경우</p> <p>2. 신청인이 사전심사결과 승인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내용 또는 조건을 준수하여 과세가격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p> <p>3. 관련법령 또는 국제협약의 변경</p>	<p>5. <u>신청인이 사전심사결과 결정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내용 또는 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신고한 경우</u></p> <p>⑤ ----- ----- ----- -----<u>결정된</u> ----- <u>변경</u>할 수 있다.</p> <p>1. 사전심사결과 <u>결정된</u>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전제가 되는 조건이나 가정의 중요한 부분이 변경된 경우</p> <p>2. <u>사전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자가 국내외 시장상황 변동 등으로 인해 결정된 내용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u></p> <p>3. 관련법령 또는 국제협약의 변경</p>	<p>○ 사전심사 변경 사유 추가</p>

현행	개정(안)	개정 사유
<p>으로 사전심사결과 <u>승인된</u> 과세 가격 결정방법이 적절하지 아니 하게 된 경우 <u>&lt;신설&gt;</u></p> <p>⑥ 제5항에 따라 이미 사전심사한 내용을 <u>철회 또는 변경</u>하려는 경우 제63조와 제64조에 따른 사전심사절 차에 따라야 한다. <u>&lt;단서 신설&gt;</u></p> <p>⑦ 관세평가분류원장은 과세가격 사 전심사 내용을 <u>취소 또는 변경</u>한 경 우에는 신청인 및 통관예정지 세관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p>	<p>으로 사전심사결과 <u>결정된</u> 과세 가격 결정방법이 적절하지 아니 하게 된 경우</p> <p><u>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 하는 사전심사결과 결정된 과세 가격 결정방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u></p> <p>⑥ ----- ----- <u>변경</u> ----- ----- ----- ----- <u>. 다만, 관세평 가분류원장은 통보된 사전심사 결정 서의 문구 명확화, 단순 품목 추가 등 경미한 변경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u></p> <p>⑦ ----- ----- <u>취소, 철회 또는 변경</u> <u>한</u> ----- -----.</p>	<p>○ 경미한 변경에 대한 예외 규정 마련</p>

현행	개정(안)	개정 사유
<p>제66조(관세조사와의 관계) ① ~ ② (생략) <u>&lt;신설&gt;</u></p>	<p>제66조(관세조사와의 관계) ① ~ ② (현행과 같음) <u>③ 관세청장은 특수관계 사전심사로 인해 과세가격 결정방법이 결정된 물품에 대하여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년간 과세가격의 적정성에 한하여 정기 관세조사를 유예할 수 있다.</u></p>	<p><input type="checkbox"/> ACVA 유효기간(3년) 내에 정기 관세조사 유예 가능 규정 신설</p>
<p>제75조(재검토 기한) 관세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u>2017년 7월 1일</u>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제75조(재검토 기한) ----- ----- ----- <u>--2018년 7월 1일--</u> ----- ----- ----- ----- ----- -----</p>	<p><input type="checkbox"/> 재검토 기한 기산일 개정</p>
<p><u>&lt;신설&gt;</u></p>	<p><u>부칙 &lt;제2018-00호, 2018.00.00&gt;</u> <u>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u></p>	<p><input type="checkbox"/> 개정된 고시 시행일 명시</p>



## 동종·동류비율 이의제기서

신청인	① 업체명				② 대표자		
	③ 본사주소	( 담당자 성명, Tel, e-mail )					
④ 업종 (표준산업분류번호)		( )			⑤ 업태	( 제조, 도매, 소매 )	
⑥ 신청일자					⑦ 경유세관		
⑧ 신청품목	⑨ 신청대상 회계연도 (결산일)	⑩ 품목범위 (HS부호)	⑪ 품명 (거래품명/상표)	⑫ 업종분류번호	⑬ 매출총이익율(%)	⑭ 신청비율 (%)	
	( )			( )			
⑮ 품목범위 선정기준							
⑯ 신청사유							

「관세법 시행령」 제27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세관장이 통보한 동종·동류비율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대표 (서명 또는 인)

### 관세평가분류원장 귀하

위임장	다음 사람에게 인정신청에 관한 사항을 위임합니다.				
	위임자  (서명 또는 인)	대리인			
		구분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첨부서류 1. 동종·동류비율이 불합리한 사유  
2. 동종·동류비율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별표 제7호의 신청서 작성방법에 따라 본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첨부자료와 함께 2부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품목이 다수이고 해당 업종이 각각 다른 경우에는 각 품목별로 본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m<sup>2</sup>(재활용품))

[별지 제2호 서식] <개 정>

<b>동종·동류비율 이의제기서</b>						
(처리기간 : 30일)						
신청인	① 업체명			② 대표자		
	③ 본사주소			( 담당자 성명, Tel, e-mail )		
④ 업종 (표준산업분류번호)		( )		⑤ 업태		( 제조, 도매, 소매 )
⑥ 신청일자			⑦ 경유세관			
⑧ 신청품목	⑨ 신청대상 회계연도 (결산일)	⑩ 품목범위 (HS부호)	⑪ 품명 (거래품명/상표)	⑫ 업종분류번호	⑬ 매출총이익 율(%)	⑭ 신청비율 (%)
		( )		( )		
⑮ 품목범위 선정기준						
⑯ 신청사유						
「관세법 시행령」 제27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세관장이 통보한 동종·동류비율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합니다. <div style="text-align: right;">20   년   월   일</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span>신청인</span> <span>대표 (서명 또는 인)</span> </div>						
<b>관세평가분류원장 귀하</b>						
위임장	다음 사람에게 인정신청에 관한 사항을 위임합니다.					
	위임자  (서명 또는 인)	대리인				
		구분	성명	주소	전화번호	
첨부서류 1. 동종·동류비율이 불합리한 사유 2. 동종·동류비율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별표 제7호의 신청서 작성방법에 따라 본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첨부자료와 함께 2부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품목이 다수이고 해당 업종이 각각 다른 경우에는 각 품목별로 본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m<sup>2</sup>(재활용품))

<b>확정가격 신고(수리)서</b>			
① 수입신고번호 (신고일자)		② 수입물품	
③ 신고수리일자		④ 확정신고기간	
⑤ 잠정가격		⑥ 잠정 가산율	
⑦ 확정가격		⑧ 확정 가산율	
⑨ 가격차액 (⑤-⑦)		⑩ 차액 가산율 (⑥-⑧)	
⑪ 확정가격(확정 가산율) 산정내역 :			
⑫ 확정가산율 산정 신청 여부 (제51조의2제1항 적용)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관세법」 제2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확정가격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관세법」 제2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확정가격신고를 수리합니다.  20    년    월    일  ○ ○ 세 관 장                      직인	
첨 부 서 류	1. 송품장                      (    ) 2. 계약서                      (    ) 3. 각종 비용 및 산출 근거 증빙 자료 (    ) 4. 기타 가격신고 입증 자료                      (    ) 5. 수입물품 거래가격 조정계획에 따른 거래가격 조정금액이 실제로 지급 또는 영수되었고, 해당 거래의 수입물품에 객관적으로 배분·계산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관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잠정가격신고를 한 경우에 한함) ※ 해당 서류 없는 경우 제출 불필요		
※ 확정가격신고 수리는 신고의 형식적 요건에 대한 확인행위로 신고에 따른 세액의 적정성 등에 대해서는 사후에 심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m<sup>2</sup>(재활용품))

<h2 style="margin: 0;">확정가격 신고(수리)서</h2> <span style="float: right; color: blue; font-weight: normal;">(처리기간 : 15일)</span>			
① 수입신고번호 (신고일자)		② 수입물품	
③ 신고수리일자		④ 확정신고기간	
⑤ 잠정가격		⑥ 잠정 가산율	
⑦ 확정가격		⑧ 확정 가산율	
⑨ 가격차액 (⑤-⑦)		⑩ 차액 가산율 (⑥-⑧)	
⑪ 확정가격(확정 가산율) 산정내역 :			
⑫ 확정가산율 산정 신청 여부 (제51조의2제1항 적용)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관세법」 제2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확정가격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div style="text-align: center; font-size: 1.2em;">○ ○ 세 관 장 귀하</div>		「관세법」 제2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확정가격신고를 수리합니다.  20    년    월    일  <div style="text-align: center; font-size: 1.2em;">○ ○ 세 관 장 <span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5px;">직인</span></div>	
첨 부 서 류	1. 송품장                      (    ) 2. 계약서                      (    ) 3. 각종 비용 및 산출 근거 증빙 자료 (    ) 4. 기타 가격신고 입증 자료                      (    ) 5. 수입물품 거래가격 조정계획에 따른 거래가격 조정금액이 실제로 지급 또는 영수되었고, 해당 거래의 수입물품에 객관적으로 배분·계산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관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잠정가격신고를 한 경우에 한함) ※ 해당 서류 없는 경우 제출 불필요		
※ 확정가격신고 수리는 신고의 형식적 요건에 대한 확인행위로 신고에 따른 세액의 적정성 등에 대해서는 사후에 심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확정가격 신고기간 연장 신청(수리)서

신청인	① 상 호				② 대표자	
	③ 주 소	(전화번호)				
④ 수입신고 일 자	⑤ 수입신고번호	⑥ 수입물품	⑦ 수 량	⑧ 잠정가격 (잠정가산율)		
⑨ 통관세관장	⑩ 최초신고기간	⑪ 연장신청기간	⑫ 연장수리기간 (세관기재란)			
⑬ 확정가격 신고기간 연장 신청 사유 :						
「관세법 시행령」 제16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확정가격 신고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div style="text-align: center;">20   년   월   일</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div>			「관세법 시행령」 제16조제4항에 따라 위 신청 사항을 수리합니다.  <div style="text-align: center;">20   년   월   일</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                     ○ ○ 세 관 장              <span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5px;">직인</span> </div>			

210mm×297mm(일반용지 60g/m<sup>2</sup>(재활용품))

## 확정가격 신고기간 연장 신청(수리)서

(처리기간 : 3일)

신청인	① 상 호				② 대표자		
	③ 주 소	(전화번호)					
④ 수입신고 일 자	⑤ 수입신고번호	⑥ 수입물품	⑦ 수 량	⑧ 잠정가격 (잠정가산율)			
⑨ 통관세관장	⑩ 최초신고기간	⑪ 연장신청기간	⑫ 연장수리기간 (세관기재란)				
⑬ 확정가격 신고기간 연장 신청 사유 :							
「관세법 시행령」 제16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확정가격 신고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div style="text-align: center;">20   년   월   일</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div>				「관세법 시행령」 제16조제4항에 따라 위 신청 사항을 수리합니다.  <div style="text-align: center;">20   년   월   일</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                     ○ ○ 세 관 장                      <span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10px;">직인</span> </div>			

210mm×297mm(일반용지 60g/m<sup>2</sup>(재활용품))

## 가산율(공제율) 산정 신청서

신 청 인	① 상 호		② 대 표 자	
	③ 주 소	(전화번호)		
④ 수입 물품	⑤ 최근 3년간 관련물품 수입실적		⑥ 수입관련계약기간	⑦ 통관세관장
		○ 건수 :                                 건		
		○ 금액(W) :                            원		
⑧ 신청대상요소	로열티( ) 기술용역비( ) 사후귀속이익( ) 기 타( )			
⑨ 최근 3년 가산율(공제율) 적용 실적		잠정(확정) 가산율 :            잠정(확정) 공제율 :		
⑩ 수입 거래 내용 :				
⑪ 가격 결정 방법 :				
「관세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산율(공제율) 산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b>관 세 청 장(세 관 장) 귀 하</b>				
첨 부 서 류	1. 최근 3년간 당해 물품 실적 자료( ) 2. 거래관계에 관한 기본 계약서 (기술도입계약서 등) ( ) 3. 수입물품 관련 사업계획서( ) 4. 수입물품공급계약서 ( ) 5. 기타 가격결정 근거 자료 ( ) 6. 최근 3년간 당해 수입물품의 국내 판매가격과 이윤 및 일반경비 ( ) ※ 해당 서류가 없는 경우 제출 불필요			

[별지 제10호 서식] <개정>

# 가산율(공제율) 산정 신청서

(처리기간 : 20일)

신청인	① 상호		② 대표자	
	③ 주소	(전화번호)		
④ 수입 물품	⑤ 최근 3년간 관련물품 수입실적		⑥ 수입관련계약기간	⑦ 통관세관장
	○ 건수 :                                   건 ○ 금액(W) :                               원			
⑧ 신청대상요소	로열티( ) 기술용역비( ) 사후귀속이익( ) 기타( )			
⑨ 최근 3년 가산율(공제율) 적용 실적	잠정(확정) 가산율 :       잠정(확정) 공제율 :			
⑩ 수입 거래 내용 :				
⑪ 가격 결정 방법 :				
<p>「관세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산율(공제율) 산정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20%;">20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청 인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 margin-top: 10px;">관 세 청 장(세 관 장) 귀 하</p>				
첨 부 서 류	1. 최근 3년간 당해 물품 실적 자료( ) 2. 거래관계에 관한 기본 계약서 (기술도입계약서 등) ( ) 3. 수입물품 관련 사업계획서( ) 4. 수입물품공급계약서 ( ) 5. 기타 가격결정 근거 자료 ( ) 6. 최근 3년간 당해 수입물품의 국내 판매가격과 이윤 및 일반경비 ( ) ※ 해당 서류가 없는 경우 제출 불필요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12호 서식] <개정>

#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신청서 【일반용】

(처리기간 : 1개월)

신청인	① 상호		② 대표자	
	③ 주소	(전화번호)		
④ 수입 예정 물품				
⑤ 수입 예정 시기		⑥ 통관 예정 세관		
⑦ 신청 내용	관세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가산 금액			
	관세법 제30조제2항의 실제지급금액에서 더하거나 빼야 할 금액			
	관세법 제30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⑧ 거래내용 및 수입가격 결정방법				
「관세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b>관세평가분류원장 귀하</b>				
<b>&lt;구비서류&gt;</b> 1. 거래관계에 관한 기본계약서(투자계약서, 대리점계약서, 기술용역계약서, 기술도입계약서) 2. 수입물품과 관련된 사업계획서 3. 수입물품 공급계약서 4. 수입물품 가격결정의 근거자료 5. 기타 과세가격 결정방법 확인에 필요한 자료				

210mm×297mm(일반용지 60g/m<sup>2</sup>(재활용품))

##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서 【일반용】

신청인	① 상 호		② 대 표 자	
	③ 주 소	(전화번호)		
	④ 수입 예정 물품			
	⑤ 수입 예정 시기		⑥ 통관 예정 세관	
⑦ 거래내용 및 가격결정 방법				
⑧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 결과				
⑨ 유효 기 간				
※ 본 결정의 기초가 된 거래 관계와 거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항을 즉시 사전심사서를 교부한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관세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과세가격 사전심사서를 교부합니다.				
20    년    월    일				
관세평가분류원장 <span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10px;">직인</span>				
<첨부서류>				

210mm×297mm(일반용지 60g/m<sup>2</sup>(재활용품))

##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 결정서 【일반용】

신청인	① 상 호		② 대 표 자	
	③ 주 소	(전화번호)		
	④ 수입 예정 물품			
	⑤ 수입 예정 시기		⑥ 통관 예정 세관	
⑦ 거래내용 및 가격결정 방법				
⑧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 결과				
	⑨ 적 용 기 간			
※ 본 결정의 기초가 된 거래 관계와 거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항을 즉시 사전심사 결정서를 교부한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관세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과세가격 사전심사 결정서를 교부합니다.				
20    년    월    일				
관세평가분류원장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display: inline-block; padding: 5px 10px;">직인</div>	
<첨부서류>				

210mm×297mm(일반용지 60g/m<sup>2</sup>(재활용품))



## ㉠ 거래내용 및 수입가격 결정방법

※ 아래의 내용을 자유형식으로 간략하게 작성하고 신청서 갑지에 첨부하여야 하며, 작성한 내용에 대한 근거자료(제출서류로 확인이 곤란한 경우)를 제출하여야 함

### 1. 거래내용

- 거래구조도
- 거래의 조건 또는 전제 (품목별로 구분되는 경우 구분 작성)
- 최근 5년간 공급자별, 품목별, 규격별 수입가격 현황(신청물품에 한함)

### 2. 거래당사자간 수입가격 결정방법

- 정상가격(이전가격) 산출방법(T/P 가이드라인의 방법)
- 가격 산출 방법 또는 계산식
- 가격 결정방법에 대한 설명

### 3. 세관신고 과세가격 결정방법

- 적용받고자 하는 과세가격 결정방법(「관세법」 제30조에서 제35조 중 1)
- 가격 산출 방법 또는 계산식
- 선택 경위 및 이유 설명

### 4. 특수관계의 거래가격 영향여부

- 비교가격법에 의한 비교(「관세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제3호)
  - 비교가격 존재여부 및 비교가격과 신청물품의 가격 비교
- 거래상황법에 의한 비교(「관세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제1호,제2호)
  - 통상적인 가격결정 방법,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 등과 비교

### 5. 세관 심사실적 등

- 세관으로부터 기업심사를 받은 경우 심사기간, 대상기간, 과세가격 결정방법
- 「관세법 시행령」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 산출한 동종동류비율을 통보 받은 경우 품목별 통보일자, 동종동류비율
- 수입물품 과세가격 사전심사(ACVA)를 받은 경우 사전심사서 교부일자, 과세가격 결정방법

[별지 제14호 서식]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신청서(갑) <개정>

##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신청서 【특수관계자용】

(처리기간 : 1년)

신청인	① 법인명(상호)		② 대 표 자	
	③ 주 소	(전화번호)		
관련기업	④ 법인명(상호)		⑤ 대 표 자	
	⑥ 신청인과의 관계	<input type="checkbox"/> 모자관계(지분율 %) <input type="checkbox"/> 본지사관계 <input type="checkbox"/> 기타(관계: )		
	⑦ 국가 및 주소			
⑧ 수입 예정 물품		(품목별·규격별 명세 기재)		
⑨ 수입 예정 시기		⑩ 통관 예정 세관		
⑪ 거래내용 및 수입가격 결정방법		(을지 작성)		

「관세법」 제37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관세평가분류원장 귀하

<구비서류>

1. 거래당사자의 사업연혁·사업내용·조직 및 출자관계 등에 관한 설명자료
2. 관할세무서에 신고한 거래당사자의 최근 3년 동안의 재무제표, 정상가격산출신고서(무형자산 및 용역거래 포함) - 신청한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과 관련이 있는 경우
3. 물품수입거래에 관한 계약서 및 이에 부수되는 서류 (투자계약서, 대리점계약서, 기술용역계약서, 기술도입계약서, 원가분담계약서, 비용분담계약서 등)
4. 수입물품 가격의 산출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다음의 자료  
 가. 가격산출 관련 재무자료  
 나. 가격산출의 전제가 되는 조건 또는 가정에 대한 설명자료  
 다. 특수관계자간 가격결정에 관한 내부지침 및 정책
5. 국세청에 APA승인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하는 서류
6. 회계법인이 작성한 이전가격보고서가 있는 경우 보고서(산출근거자료 및 자산·용역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관한 분석자료 포함)
7.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영 제23조 참조)
8. 최근 3년간 수입품목별 매출액·매출원가(도매·소매, 특수관계자간 거래·일반거래 등 판매 형태 별로 구분한 것) - 신청한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과 관련이 있는 경우
9. 기타 과세가격결정방법 확인에 필요한 서류

210mm×297mm(일반용지 60g/m<sup>2</sup>(재활용품))

## ㉠ 거래내용 및 수입가격 결정방법

※ 아래의 내용을 자유형식으로 간략하게 작성하고 신청서 갑지에 첨부하여야 하며, 작성한 내용에 대한 근거자료(제출서류로 확인이 곤란한 경우)를 제출하여야 함

### 1. 거래내용

- 거래구조도
- 거래의 조건 또는 전제 (품목별로 구분되는 경우 구분 작성)
- 최근 5년간 공급자별, 품목별, 규격별 수입가격 현황(신청물품에 한함)

### 2. 거래당사자간 수입가격 결정방법

- 정상가격(이전가격) 산출방법(T/P 가이드라인의 방법)
- 가격 산출 방법 또는 계산식
- 가격 결정방법에 대한 설명

### 3. 세관신고 과세가격 결정방법

- 적용받고자 하는 과세가격 결정방법(「관세법」 제30조에서 제35조 중 1)
- 가격 산출 방법 또는 계산식
- 선택 경위 및 이유 설명

### 4. 특수관계의 거래가격 영향여부

- 비교가격법에 의한 비교(「관세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제3호)
  - 비교가격 존재여부 및 비교가격과 신청물품의 가격 비교
- 거래상황법에 의한 비교(「관세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제1호,제2호)
  - 통상적인 가격결정 방법,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 등과 비교

### 5. 세관 심사실적 등

- 세관으로부터 기업심사를 받은 경우 심사기간, 대상기간, 과세가격 결정방법
- 「관세법 시행령」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 산출한 동종동류비율을 통보 받은 경우 품목별 통보일자, 동종동류비율
- 수입물품 과세가격 사전심사(ACVA)를 받은 경우 사전심사 결정서 교부일자, 과세가격 결정방법



<b>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 결과통보서 【특수관계자용】</b>			
신청인	① 상 호		② 대 표 자
	③ 주 소	(전화번호)	
관련기업	④ 법인명(상호)		⑤ 대 표 자
	⑥ 신청인과의 관계	<input type="checkbox"/> 모자관계(지분율 %) <input type="checkbox"/> 본지점관계 <input type="checkbox"/> 기타(관계: )	
	⑦ 국가 및 주소		
⑧ 수입예정물품			⑨ 수입예정시기
⑩ 사전심사 결과		⑪ 근거 또는 이유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영향 미침		
	영향 미치지 않음		
관세법 제30조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른 가산 또는 공제요소 해당 여부	가산요소( )		
	공제요소( )		
관세법 제31조 내지 제35조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방법	법 제__조 적용		
<p>「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64조에 따라 특수관계자간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 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 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50px;"><b>관세평가분류원장 (인)</b></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b>귀 하</b></p>			
<p>※ 1. 심사결과에 동의하시는 경우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동의여부를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p> <p>2. 관세평가분류원장은 동의여부를 제출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합니다.</p> <p>3. 신청인의 부동의 또는 기한 내에 동의여부를 통보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전심사 신청은 신청인에 의해 철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p>			

210mm×297mm(일반용지 60g/m<sup>2</sup>(재활용품))

<b>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 결과통보서 【특수관계자용】</b>			
신청인	① 상호		② 대표자
	③ 주소	(전화번호)	
관련기업	④ 법인명(상호)		⑤ 대표자
	⑥ 신청인과의 관계	<input type="checkbox"/> 모자관계(지분율 %) <input type="checkbox"/> 본지점관계 <input type="checkbox"/> 기타(관계:     )	
	⑦ 국가 및 주소		
⑧ 수입예정물품			⑨ 수입예정시기
⑩ 사전심사 결과		⑪ 근거 또는 이유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영향 미침		
	영향 미치지 않음		
관세법 제30조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른 가산 또는 공제요소 해당 여부	가산요소(     )		
	공제요소(     )		
관세법 제31조 내지 제35조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방법	법 제___조 적용		
<p>「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64조에 따라 특수관계자간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 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 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50px;"><b>관세평가분류원장 (인)</b></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b>귀 하</b></p>			
<p>※ 1. 심사결과에 동의하시는 경우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동의여부를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p> <p>2. 관세평가분류원장은 동의여부를 제출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결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합니다.</p> <p>3. 신청인의 부동의 또는 기한 내에 동의여부를 통보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전심사 신청은 신청인에 의해 철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p>			

210mm×297mm(일반용지 60g/m<sup>2</sup>(재활용품))

<b>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서 【특수관계자용】</b>			
신청인	① 상 호		② 대 표 자
	③ 주 소	(전화번호)	
관련기업	④ 법인명(상호)		⑤ 대 표 자
	⑥ 신청인과의 관계	<input type="checkbox"/> 모자관계(지분율 %) <input type="checkbox"/> 본·지점관계 <input type="checkbox"/> 기타(관계: )	
	⑦ 국가 및 주소		
⑧ 사전심사 승인물품			
⑨ 승인기간	20 . . . . ~ 20 . . . .	⑩ 통관예정세관	
⑪ 신청내용			
⑫ 사전심사 결과 과세가격결정방법			
⑬ 승인조건			
※ 본 결정의 기초가 된 거래 관계와 거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항을 즉시 사전심사서를 교부한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관세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과세가격 사전심사서를 교부합니다.			
20    년    월    일			
<b>관세평가분류원장</b> <span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10px;">직인</span>			
<뒷면>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 승인에 따른 이행의무 안내			

210mm×297mm(일반용지 60g/m<sup>2</sup>(재활용품))

##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승인에 따른 이행의무 안내

### 1. 사전심사 승인의 주요 가정 및 조건의 실현

신청인은 사전심사 승인 적용기간 중 사전심사 승인물품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실질적으로 충족시켜야 사전심사 승인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 가. 승인의 전제가 되는 거래관계 및 거래조건 등의 동일성 유지
- 나. 승인된 과세가격결정방법의 전제가 되는 근거 또는 가정의 실현
- 다. 시장상황이나 경제상황의 중대한 변화가 없을 것
- 라. 기타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연례보고서에 포함하도록 정한 조건 등

### 2. 신청인의 사전심사서 변경 요청

신청인은 법령이나 거래관계의 변경 등 사전심사 승인의 주요 가정 및 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변경사실 및 사유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사전심사서의 변경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 3. 사전심사 승인의 취소

관세평가분류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심사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가. 신청인이 연례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 나. 연례보고서 자료 중 중요한 부분이 제출되지 아니하여 보완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다. 연례보고서 자료 중 중요한 부분이 허위로 작성된 경우
- 라. 사전심사 신청서류 중 중요한 부분이 제출되지 않았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

### 4. 사전심사 승인의 철회·변경

관세평가분류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심사승인을 철회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가. 사전심사결과 승인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전제가 되는 조건이나 가정의 중요한 부분이 변경된 경우
- 나. 신청인이 사전심사결과 승인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내용 또는 조건을 준수하여 과세가격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 다. 관련법령 또는 국제협약의 변경으로 사전심사결과 승인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이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5. 연례보고서의 제출

신청인은 매년 기업회계 결산일 이후 3개월 이내에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연례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 사전심사결과 승인된 과세가격결정방법의 전제가 되는 근거 또는 가정의 실현여부 검토서
- 나. 사전심사결과 승인된 과세가격결정방법으로 산출된 과세가격 및 그 산출과정
- 다.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산출된 과세가격과 실제의 거래가격이 다른 경우에는 그 차이에 대한 처리내역
- 라. 기타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연례보고서에 포함하도록 정한 사항

<b>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결정서 【특수관계자용】</b>			
신청인	① 상호		② 대표자
	③ 주소	(전화번호)	
관련기업	④ 법인명(상호)		⑤ 대표자
	⑥ 신청인과의 관계	<input type="checkbox"/> 모자관계(지분율 %) <input type="checkbox"/> 본·지점관계 <input type="checkbox"/> 기타(관계:      )	
	⑦ 국가 및 주소		
⑧ 사전심사 결정물품			
⑨ 적용기간	20 . . . . ~ 20 . . . .	⑩ 통관예정세관	
⑪ 신청내용			
⑫ 사전심사 결과 과세가격결정방법			
⑬ 결정조건			
※ 본 결정의 기초가 된 거래 관계와 거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항을 즉시 사전심사 결정서를 교부한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관세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과세가격 사전심사 결정서를 교부합니다.  20    년    월    일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center; align-items: center; gap: 20px;"> <span style="font-size: 1.2em; font-weight: bold;">관세평가분류원장</span>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15px;">직인</div> </div>			
<뒷면>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 결정에 따른 이행의무 안내			

210mm×297mm(일반용지 60g/m<sup>2</sup>(재활용품))

##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결정에 따른 이행의무 안내

### 1. 사전심사 결정의 주요 가정 및 조건의 실현

신청인은 사전심사 적용기간 중 사전심사 결정물품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실질적으로 충족시켜야 사전심사 결정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 가. 결정의 전제가 되는 거래관계 및 거래조건 등의 동일성 유지
- 나. 결정된 과세가격결정방법의 전제가 되는 근거 또는 가정의 실현
- 다. 시장상황이나 경제상황의 중대한 변화가 없을 것
- 라. 기타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연례보고서에 포함하도록 정한 조건 등

### 2. 신청인의 사전심사 결정서 변경 요청

신청인은 법령이나 거래관계의 변경 등 사전심사 결정의 주요 가정 및 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변경사실 및 사유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사전심사 결정서의 변경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 3. 사전심사 결정의 취소·철회

관세평가분류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심사결정을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습니다.

- 가. 신청인이 연례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 나. 연례보고서 자료 중 중요한 부분이 제출되지 아니하여 보완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다. 연례보고서 자료 중 중요한 부분이 허위로 작성된 경우
- 라. 사전심사 신청서류 중 중요한 부분이 제출되지 않았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
- 마. 신청인이 사전심사결과 결정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내용 또는 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신고한 경우

### 4. 사전심사 결정의 변경

관세평가분류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결정된 사전심사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가. 사전심사결과 결정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전제가 되는 조건이나 가정의 중요한 부분이 변경된 경우
- 나. 사전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자가 국내외 시장상황 변동 등으로 인해 결정된 내용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 다. 관련법령 또는 국제협약의 변경으로 사전심사결과 결정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이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라.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전심사결과 결정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 5. 연례보고서의 제출

신청인은 매년 기업회계 결산일 이후 4개월 이내에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연례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사전심사 결정서를 교부받은 신청인은 사전심사 결정서를 교부받은 날이 기업회계 결산일로부터 6월 미만일 경우 당해년도 연례보고서를 차년도 연례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관장은 본사의 자료 제공 지연 등의 사유로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고서를 제출하는 자의 요청에 따라 2개월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가. 사전심사결과 결정된 과세가격결정방법의 전제가 되는 근거 또는 가정의 실현여부 검토서
- 나. 사전심사결과 결정된 과세가격결정방법으로 산출된 과세가격 및 그 산출과정
- 다.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산출된 과세가격과 실제의 거래가격이 다른 경우에는 그 차이에 대한 처리내역
- 라. 기타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연례보고서에 포함하도록 정한 사항

<b>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연례보고서</b>			
보고자	① 상 호		② 대 표 자
	③ 주 소	(전화번호)	
④ 승인물품		(첨부가능)	
⑤ 회계연도		⑥ 통관세관	
⑦ 관련 기업	법인명(상호)	대 표 자	
	신청인과의 관계	<input type="checkbox"/> 모자관계(지분율 %) <input type="checkbox"/> 본·지점관계 <input type="checkbox"/> 기타(관계: )	
	국가 및 주소		
⑧ 사전심사결과			
⑨ 유효기간			
⑩ 실제 거래가격 결정방법 (과세가격 결정방법 및 산출과정)			
<p>「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6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결과에 따른 연례보고서를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 font-size: 1.2em;">관세평가분류원장 귀하</p>			
<p>&lt;첨부서류&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전심사결과 승인된 과세가격결정방법의 전제가 되는 근거 및 가정의 실현여부</li> <li>2. 사전심사결과 승인된 과세가격결정방법으로 산출된 과세가격 및 그 산출과정</li> <li>3.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산출된 과세가격과 실제의 거래가격이 다른 경우에는 그 차이에 대한 처리내역</li> <li>4. 사업연혁, 사업내용, 조직, 출자관계, 재무제표, 수입물품 전체 현황, 수입거래 관련 계약서, 수입물품별 가격산출방법</li> <li>5. 주요 매입처, 매출처별 매입원가 및 매출원가 등 상품 및 제품 가격 적정성 검토에 필요한 자료</li> <li>6. 기타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연례보고서에 포함하도록 정한 사항</li> </ol>			

210mm×297mm(일반용지 60g/m<sup>2</sup>(재활용품))

<b>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연례보고서</b>			
보고자	① 상 호		② 대 표 자
	③ 주 소	(전화번호)	
④ 결정물품		(첨부가능)	
⑤ 회계연도		⑥ 통관세관	
⑦ 관련 기업	법인명(상호)	대 표 자	
	신청인과의 관계	<input type="checkbox"/> 모자관계(지분율 %) <input type="checkbox"/> 본·지점관계 <input type="checkbox"/> 기타(관계: )	
	국가 및 주소		
⑧ 사전심사결과			
⑨ 적 용 기 간			
⑩ 실제 거래가격 결정방법 (과세가격 결정방법 및 산출과정)			
<p>「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6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결과에 따른 연례보고서를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 font-size: 1.2em;">관세평가분류원장 귀하</p>			
<p>&lt;첨부서류&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전심사결과 결정된 과세가격결정방법의 전제가 되는 근거 및 가정의 실현여부</li> <li>2. 사전심사결과 결정된 과세가격결정방법으로 산출된 과세가격 및 그 산출과정</li> <li>3.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산출된 과세가격과 실제의 거래가격이 다른 경우에는 그 차이에 대한 처리내역</li> <li>4. 사업연혁, 사업내용, 조직, 출자관계, 재무제표, 수입물품 전체 현황, 수입거래 관련 계약서, 수입물품 별 가격산출방법</li> <li>5. 주요 매입처, 매출처별 매입원가 및 매출원가 등 상품 및 제품 가격 적정성 검토에 필요한 자료</li> <li>6. 기타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연례보고서에 포함하도록 정한 사항</li> </ol>			

210mm×297mm(일반용지 60g/m<sup>2</sup>(재활용품))







<b>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 재심사 결과통보서</b>			
신청인	① 상 호		② 대 표 자
	③ 주 소	(전화번호)	
④ 수입 예정 물품			
⑤ 수입 예정 시기		⑥ 통관 예정 세관	
⑦ 재심사 신청 요지			
⑧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재심사 결과			
⑨ 유효 기간			
※ 본 결정의 기초가 된 거래 관계와 거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항을 즉시 사전심사서를 교부한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관세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과세가격 사전심사 재심사 결과통보서를 교부합니다.			
20    년    월    일			
<b>관세평가분류원장</b> <span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10px;">직인</span>			
<첨부서류>			

210mm×297mm(일반용지 60g/m<sup>2</sup>(재활용품))

<b>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 재심사 결과통보서</b>			
신청인	① 상 호		② 대 표 자
	③ 주 소	(전화번호)	
	④ 수입 예정 물품		
	⑤ 수입 예정 시기	⑥ 통관 예정 세관	
⑦ 재심사 신청 요지			
⑧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재심사 결과			
⑨ 적 용 기 간			
※ 본 결정의 기초가 된 거래 관계와 거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항을 즉시 사전심사 결정서를 교부한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관세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과세가격 사전심사 재심사 결과통보서를 교부합니다.			
20    년    월    일			
<b>관세평가분류원장</b> <span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10px;">직인</span>			
<첨부서류>			

210mm×297mm(일반용지 60g/m<sup>2</sup>(재활용품))











## 확정가산율 산정 신청서

신청인	① 상 호			② 대 표 자		
	③ 주 소	(전화번호)				
④ 수입 물품		⑤ 잠정가산율		⑥ (신청인 산출) 확정가산율		⑦ 통관세관장
⑧ 잠정가격신청사유						
⑨ 최근3년 잠정·확정가산율 및 확정가산율 확인 세관		- 20 년(잠정가산율, 확정가산율)      세관 - 20 년(잠정가산율, 확정가산율)      세관 - 20 년(잠정가산율, 확정가산율)      세관				
⑩ 잠정가산율 산출내역 :  (필요시 별지 작성)						
⑪ 신청인이 계산한 확정가산율 산출내역 :  (필요시 별지 작성)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51조의2에 따라 확정가산율 산출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b>세 관 장 귀 하</b>						
첨부서류	확정가산율 산출에 필요한 증빙 서류 (관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제3호 및 제4호의 과세자료)					

210mm×297mm(일반용지 60g/m<sup>2</sup>(재활용품))

## 확정가산을 산정 신청서

(처리기간 : 15일)

신 청 인	① 상 호	② 대 표 자	
	③ 주 소	(전화번호)	
④ 수입 물품	⑤ 잠정가산율	⑥ (신청인 산출) 확정가산율	⑦ 통관세관장
⑧ 잠정가격신청사유			
⑨ 최근3년 잠정·확정가산율 및 확정가산율 확인 세관	- 20 년(잠정가산율, 확정가산율)      세관 - 20 년(잠정가산율, 확정가산율)      세관 - 20 년(잠정가산율, 확정가산율)      세관		
⑩ 잠정가산율 산출내역 :  (필요시 별지 작성)			
⑪ 신청인이 계산한 확정가산율 산출내역 :  (필요시 별지 작성)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51조의2에 따라 확정가산율 산출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세 관 장 귀 하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확정가산율 산출에 필요한 증빙 서류 (관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제3호 및 제4호의 과세자료)		

210mm×297mm(일반용지 60g/m<sup>2</sup>(재활용품))